

학 · 연 협동과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조(과정) 제②항에 의거하여 호서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과 외부 각 연구원(소)과의 약정에 따라 학·연 협동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열과 전공) 학·연 협동과정에 두는 계열과 전공은 다음과 같다.

1. 생산기술연구원

과 정	학 과
학·연 협동과정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제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제3조 (입학) ① 입학전형은 매 년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자격은 대학원 학칙에 정해진 바와 같으며, 국내 산업체 또는 연구원(소)에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연구원(소)의 추천을 받은 미취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구비서류는 대학원 입학에 관한 내규에 정해진바 이외에 연구계획서 1부, 취업자는 재직증명서 1통, 소속기관장의 취학동의서(소정양식)1통(합격자에 한함)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학전형은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으로 시행한다.

⑤ 합격사정, 신입생 등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정해진 바와 같다.

제4조 (등록, 휴학, 복학, 재입학)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은 대학원 학칙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학·연 협동과정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1. 재학기간 중 고의로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 또는 휴학하는 경우
3. 매 학기 시작 전까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수업) ① 수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② 수강교과목은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과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를 선택한다.

③ 강의는 대학원에서, 실험실습 및 연구는 각 연구원(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해당 주임교수와 연구 원(소)측과의 협의에 의에 의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연 협동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은 각 연구원(소)장이 추천하는 책임 또는 선임연구원을 대학원에 강사로 출강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우리 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격시험) ① 학·연 협동과정의 학생이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자격시험은 대학원 학칙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시험위원 선정은 해당 주임교수와 각 연구원(소)측과의 협의에 의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구성과 위원 임기) ① 학·연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6-10인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맡고 위원은 교내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3-5인과 각 연구원(소)의 선임 또는 책임 연구원 중에서 각 연구원(소)장이 추천하는 2-3인

을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학·연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과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개최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 부서(기관)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청취 및 기타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학위청구논문) ①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를 심사한다.

제13조 (객원 연구원 및 객원교수) ① 학·연 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객원 연구원 및 객원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을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원(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연구원(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소)의 책임 또는 선임연구원을 각 연구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의 객원 교수로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추천방법 및 절차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급여) 대학원과 연구원(소)에서 위촉한 객원교수와 객원 연구원의 급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급여규정에 따라 소정의 급여(강사료, 논문 지도수당, 연구지도비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이 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해당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운영위원장의 책임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제16조 (준용) 이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운영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